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과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밀 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해밀도서관은 원미구 중동 1118번지에 둬.(안 제2조)
- 나. 해밀도서관에는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청소년자료실 및 열람실을 설치함.(안 제3조)
- 다. 해밀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증진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해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해밀도서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과 해밀도서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 7조)
- 바. 해밀도서관의 인원과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승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 사. 수탁자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등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당초(2003년도) 공유재산심의시 ‘터치미술관’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분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도서관 위치 변경 등에 따라 접근성, 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공예교육실을 설치하여 전시실로 겸용할 계획임. 또한, 분과위원회 해산으로 지속적인 자문이 불가하였음.
○ 본 시설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인가?	○ 시각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도서관에 청소년 자료실, 열람실이 설치되는데 법령에 근거한 의무 시설인가?	○ 공공도서관 기능의 일부로 보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해밀도서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만 볼 수 없는데 도서관법, 장애인 복지법 등에 의한 복합시설인가?	○ 주기능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이므로 장애인 복지 시설임.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는 장애인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포함됨.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해도 되는가?	○ 큰 문제는 없다고 봄.
○ 제6조 단서조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당연히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됨.
○ 해밀도서관 주기능이 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함.
○ 위탁공고시 공개설명회 개최 등 시설현황이나 기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위탁법인을 모집하는 등 가장 적합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 그렇게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141호
의결 년월일	2007. 9.14 (제138회)

제안년월일 : 2007. 9. 12.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해밀도서관의 업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여 점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로 규정된 수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하며, 재위탁의 절차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해밀도서관 업무중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증진사업”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로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로 “그 밖에 점자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을 “그 밖에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수정함. (안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로 규정된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 제1항)
- 재위탁 단서조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3호중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증진사업”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로 수정함.

안 제4조 제4호중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로 수정함.

안 제4조 제5호중 “그 밖에 점자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 지원 업무 등”을 “그 밖에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수정 함.

안 제5조 제1항중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장애인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함.

안 제6조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함.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4조(업무) (생략)</p> <p>1~2. (생략)</p> <p>3. <u>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증진사업</u></p> <p>4. <u>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5. <u>그 밖에 점자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자 지원 업무 등</u></p>	<p>제4조(업무) (조례안과 같음)</p> <p>1~2. (조례안과 같음)</p> <p>3. <u>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u></p> <p>4. <u>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u></p> <p>5. <u>그 밖에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u></p>
<p>제5조(위탁운영) ①-----</p> <p>-- <u>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장애인단체</u></p> <p><u>에</u>-----.</p>	<p>제5조(위탁운영) ①-----</p> <p>-- <u>비영리법인에</u>-----.</p>
<p>제6조(위탁기간) -----다</p> <p>만,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p> <p><u>재위탁</u> <u>할 수 있다.</u></p>	<p>제6조(위탁기간) -----다</p> <p>만,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p> <p><u>위탁</u> <u>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u></p> <p><u>수 있다.</u></p>

[수정안 포함]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해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천시해밀도서관(이하 “해밀도서관”이라 한다)은 원미구 중동 1118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해밀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 청소년자료실 및 열람실

제4조(업무) 해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에 관한 사항
2. 점자도서관, 청소년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4.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등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

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의 사용) 해밀도서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과 해밀도서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자료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밀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해밀도서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공익상 해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